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 공고 제2020-101호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2일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 인원 및 시험과목

(단위 : 명)

시험 방법	계급	직 렬 (직 류)	선발예정 인 원	선발 구분			필기시험과목(제1·2차 병합 실시)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공개 경쟁 임용 시험	9급	교육행정	75	70	3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선택)
		사서	2	2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중 2과목(선택)
		공업 (일반기계)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일반토목)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시설 (건축)	3	3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보건 (보건)	1	1			제1차: 국어, 영어, 한국사 제2차: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 경쟁 임용 시험	9급	공업 (일반기계)	1	1			제1차: 물리 제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
		공업 (일반전기)	1	1			제1차: 물리 제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1	1			제1차: 물리 제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합 계			91	86	3	2	

※ 출제 범위 등

◆ 사회, 과학, 수학은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하며, [사회]는 정치와 법, 경제, 사회·문화, [과학]은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수학에서 출제됩니다.

◆ [행정학개론]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으로 과목명이 변경되었으며, **지방행정이 출제범위에 포함**됩니다.

◆ 교육행정, 사서 직렬의 선택과목은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 2022년부터 전 과목이 필수화됨에 따라 조정(표준)점수 제도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 **경력경쟁임용시험 과목**의 출제범위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되며, **기계설계는 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됩니다.**

2.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선택형 필기시험(객관식 4지 택1형, 과목당 20문항, 100점 만점)

구 분	공개경쟁임용시험(5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3과목)
필기시험	100분(10:00 ~ 11:40)	60분(10:00 ~ 11:00)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 가능

3.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적용 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최종(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같은 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사람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가.「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같은 법 제89조의6 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나.「공인회계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다.「세무사법」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라.「외국법자문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시장형 공기업

바. 안전 감독 업무, 인·허가 규제 업무 또는 조달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다만, 취업심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원으로 취업하는 경우 해당 학교법인 또는 학교는 제외한다.

아.「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개설한 같은 법 제33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자.「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 또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취업제한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조언·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8항은 제2항제3호에 따른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등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나.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2.12.31.이전 출생자)

※ 단,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은 2020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

다. 학력·경력·성별: 제한 없음

※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은 [별첨1] 4.응시자격 참조

라. 거주지 제한

※ 단,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아래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은 응시 가능

1.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0년 1월 1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았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 영주권자)도 위 요건과 같으며,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거주 기간 합산 요건(3년) 계산 방법은「민법」제160조 제1항을 따름

마.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자격요건

1) 사서직렬 : 면접시험일 현재 아래 자격증 중 유효한 자격증 1개 이상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직렬(직류) 및 계급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사서 9급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임용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2) 경력경쟁임용시험

-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대학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 2020.1.1. 현재 특성화·마이스터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는 응시 가능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응시 불가

※ 2021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별첨1>"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20.4.24.) 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 · 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는 관련 증빙서류(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공고문에 첨부한 **"<별첨2>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2020.4.24.)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함.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그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되어야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하며, 이 경우 급여(보호)의 신청을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하거나, 급여(보호)의 결정이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여야 함)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3) 저소득 구분 모집 응시대상자는 저소득 구분 모집과 관계없이 일반모집 시험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 불가)

4) 필기시험 합격자는 수급자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필기시험 문제 출제

가. 시험문제는 인사혁신처에 일부 시험과목을 위탁 출제하며, 위탁하지 않는 시험과목에 한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출제합니다.

※ **인사혁신처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지는 **시험 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 **공동출제 과목**의 문제는 **비공개**하며 **시험종료 후 회수**합니다.

구분	출제기관	출제과목	공개 여부	문제책 회수 여부
위탁 출제	인사혁신처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지방행정 포함), 자료조직개론, 정보봉사개론,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응용역학개론, 토목설계, 건축계획, 건축구조,	공개	미회수
공동 출제	17개 시 · 도교육청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中]** 공중보건, 보건행정 **[경력경쟁 임용시험 시험과목]** 물리,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건축계획, 건축구조	비공개	회수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4.20.(월) 09:00 ~4.24.(금) 18:00 [취소마감일 : 4.27.(월)18:00까지]	제1·2차	필기시험	2020.6.1.(월)	**2020.6.13.(토)**	2020.7.8.(수)
	제3차	면접시험	2020.7.8.(수)	**2020.7.23.(목)**	2020.7.30.(목)

※ **2021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2021.5월 중으로 변경됩니다.**

※ 시험장소(필기,면접)와 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시험/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필기시험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20.12.31.까지**, **필기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간**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에서 본인이 확인 가능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1) 접수기간 : 2020. 4. 20.(월) 09:00 ~ 2020. 4. 24.(금) 18:00

※ 응시원서 접수는 접수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접수마감일(4.24(금))은 18:00까지만 접수 가능합니다.**

2) 취소기간 : 2020. 4. 20.(월) 09:00 ~ 2020. 4. 27.(월) 18:00

※ 응시원서 취소는 취소시작일 09:00부터 24시간 가능하며, **취소마감일(4.27.(월))은 18:00까지만 취소 가능합니다.**

3)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http://edurecruit.use.g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접수자 폭주 및 인터넷 웹브라우저 오류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여유 있게 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응시수수료 : 5,000원

- 수수료 결제방법: 신용카드 결제, 휴대폰 결제, 계좌이체

※ 응시수수료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응시자는 응시수수료 면제

※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확인절차를 거쳐 응시료 환불

- 응시수수료는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 취소자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하며, 결제 수수료는 공제됩니다.(취소기간 이후에는 환불 불가)

5) 응시원서 업로드용 사진파일

- 가로 3.5cm×세로 4.5cm, 컬러 반명함, 파일크기 100Kbyte 이하, 확장자명 JPG
- 최근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촬영한 정면 상반신 컬러 반명함 사진으로써, 시험 당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이어야 합니다.

※ 응시생 본인 얼굴 정면(상반신)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하며,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본인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될 수 있음)

나. 인터넷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2) 응시직렬(직류)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3) 응시원서에는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응시표는 2020.6.1.(월) 10:00 ~ 2020.6.13.(토) 10:00까지** 온라인 채용 시스템 (http://edurecruit.use.go.kr)**에서 출력 가능하며, 시험 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합니다.

5) 접수완료와 동시에 "접수번호"가 부여되고, "응시번호"는 접수 취소기간 후에 부여됩니다.

※ 응시표 출력기간에 반드시 응시표를 출력하여 "응시번호"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응시자는 입력한 내용을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7) 선발직렬 및 구분별로 중복하여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 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8)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는 학교장 추천을 받은 사람에 한하여 원서접수를 할 수 있으며, 추천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원서를 접수하면 해당 원서접수는 취소되며, 응시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9)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가산특전 등의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합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응시원서 접수사이트는 PC 운영체제 윈도우 7~10, 익스플로러 버전 7~11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용자 PC환경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될 수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7.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가. 대상시험: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의 30%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합니다.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채용목표 인원에 미달할 경우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 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8.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가산특전 대상 및 가산점 비율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모집단위 4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가산점에 모두 해당할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 ·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은 최대 2개 까지 인정(공통적용 1개, 직렬별 1개) ·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조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모집단위 10명 이상 시 적용)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1% 또는 0.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직류)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 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배우자 또는 자녀가 6급 이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는 가산합격자가 없습니다.**(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보훈상담센터 ☎1577-0606),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산점 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자원과(☎044-202-3255)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취득하여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임용직급	자격증	가산비율
통신·정보처리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9급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2012.1.1.이전 취득은 1급만 인정(2·3급 제외)],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되며, 종전 법령에 따라 취득한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
(2012. 1. 1.이전 취득 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2,3급 제외))

※ 공통적용 가산대상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 직렬 공통으로 적용되는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점은 2021년부터 폐지될 예정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의3 제1항 삭제(2019. 6. 18.) [시행일 : 2021.1.1.]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다음 표에 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다음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table>
<tr><th rowspan="2">직렬(직류)</th><th colspan="2">자격증</th><th rowspan="2">가산비율</th><th rowspan="2">비고</th></tr>
<tr><th>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th><th>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th></tr>
<tr><td>·교육행정</td><td>-</td><td>변호사</td><td>5%</td><td rowspan="4">·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종류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7조 관련 [별표12] 참조
【별첨3】 참조</td></tr>
<tr><td rowspan="3">·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일반토목)
·시설(건축)
·보건(보건)</td><td colspan="2">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td><td>5%</td></tr>
<tr><td colspan="2" rowspan="2">기능사</td><td rowspan="2">3%</td></tr>
</table>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

※ 관련 분야 자격증을 2개 이상 소지한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라. 참고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과 의사상자 등 대상자 가산점에 모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 가능합니다.

2) 위의 “나”(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가산 특전), “다”(자격증 소지자 가산 특전) 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수를 합산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공통적용 가산 자격증 1개**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자격증 1개**에 대하여 각각 인정되며(최대 2개 인정), 하나의 자격증이 공통적용 가산분야와 직렬(직류)별 적용 가산분야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분야에만 가산점이 적용됩니다.

※가산점 합산방법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산점 중 택1】 + 【공통적용가산점 1개】 + 【직렬별가산점 1개】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일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자격증 종류(가산비율)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 OMR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 없음

5) 응시자의 부주의로 자격번호(보훈번호) 또는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등을 잘못 입력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6) 허위로 가산점을 등록하거나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9. 합격자 결정

가. 필기시험

1) **공개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총득점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다만, 교육행정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 모집은 선발예정인원의 100% 범위

2) **경력경쟁임용시험: 각 과목에서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10%의 범위**(단,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1명을 합한 인원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나.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평정결과는 다음의 등급으로 구분합니다.

1) **우수:**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정**한 경우

2) **미흡:** 면접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한 경우

3) **보통:** "우수"와 "미흡" 외의 경우

다. 최종합격자

1) 면접시험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합격**으로 합니다.
다만,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2) 면접시험에서 **"보통"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필기시험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를 포함하여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합격**으로 합니다.

3)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불합격**으로 합니다.

라. 추가합격자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응시자 유의사항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use.go.kr) 에 공고합니다.

가. 시험문제책의 과목순서는 시험공고문상의 과목순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 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및 누락, 자격미비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연락불능 등으로 초래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라. 필기시험 장소는 시험장소 공고일에 별도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공고문,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바. 답안지는 컴퓨터용 흑색 수성싸인펜으로만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펜,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및 작성상의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답안지에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할 경우 해당 문항은 무효처리 됨)

사. 응시자는 필기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만 가능]**,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시험지가 시험장에 들어간 후에는 입실 불가)

아.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태블릿 PC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스마트안경, 스마트시계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처리**합니다.

※ 통신장비, 전자기기는 시험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 시작 전에 전원을 차단하여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가산점 등 시험에 관한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차. 9급 공개경쟁시험의 선택과목은 조정점수를 적용하며, 각 과목 만점 40% 이상 득점의 판단기준은 각 과목의 조정점수와 조정 전 점수 중 어느 하나가 4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응시자격 및 가산특전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임용결격 등이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타. 최종(면접)시험 합격자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임용될 수 없습니다.

파.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3년간,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된 사람은 임용된 날로부터 4년간 타 시·도 등으로 전출할 수 없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인사팀, ☎ 052-210-5723~572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부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부

[3]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1부

【별첨1】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1.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20조제3항

2. 선발예정인원

구 분	직렬(직류)	계급	선발인원
경력경쟁	공업(일반기계)	9급	1명
	공업(일반전기)	9급	1명
	시설(건축)	9급	1명

3. 선발방법

가. 제1차·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

직렬(직류)	필기시험과목	세부내용
공업 (일반기계)	1차: 물리 2차: 기계일반 **기계설계**(2015 교육과정상 '기계제도' 교과에서 출제)	○ 과목별 100점 만점 ○ 총 60문항(과목별 20문항) ○ 객관식 4지택1형 ○ 시험시간 : 60분 ○ 출제범위: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공업 (일반전기)	1차: 물리 2차: 전기이론, 전기기기	
시설 (건축)	1차: 물리 2차: 건축계획, 건축구조	

1) 합격자 결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에 따름

2) 1·2차 시험 합격자에 한해 서류를 통해 응시 적격 여부 확인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2차 시험 합격자만 응시할 수 있음

4. 응시자격

가.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마이스터고 해당학과 졸업자** 또는 **2021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나. 응시연령은 원칙적으로 18세(2002.12.31.이전 출생자) 이상이나, 2020학년도 고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17세(2003.12.31. 이전 출생자)도 응시 가능함

※ 2021년부터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면접시험)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제한합니다.

5.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 :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추천대상자(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
  (2020.1.1. 현재 기술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각급 대학 중퇴자도 고졸자에 포함)

※ 4년제 대학, 전문대, 방송통신대, 사이버대 등 모든 대학의 재학·휴학자는 **응시 불가**

- **생활기록부상 대학 진학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의 입학 사실이 없거나 2020.1.1. 현재 중퇴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서류 확인 후 추천**

② 추천학과 : 선발 직렬의 임용예정 직무분야 관련학과 졸업(예정)자(아래표 참조)

- 아래의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6]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

직렬(직류)	관련 학과
공업(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공업(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시설(건축)	건축(건축설비)

- 선발 예정 직렬 해당 학과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49호) 직무분야-관련학과'의 학과 명칭을 기준으로 하되, 이와 직접 관련되는 학과도 포함할 수 있음

③ 위 해당학과 졸업(예정)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이상 입상자
나.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다. 아래의 학과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성취평가제 적용	
전문교과	성취도가 평균 B등급 이상이고, 그 중 50% 이상의 과목에서 성취도가 A등급인 사람
보통교과	평균 석차비율이 50% 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 이내인 사람
– 전문교과 및 보통교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성취평가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아래 기준 적용

-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학업과정 또는 학점을 이수·취득한 사람으로서 졸업 석차 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졸업(예정)자

☞ **성적합산 기준**

- 졸업자 : 고등학교 全학년 성적 기준
- 졸업예정자 : 고등학교 1~2학년 성적 기준

※ 고등학교 재학 중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로 전학한 경우, 재학생(졸업예정자)은 2학년, 졸업자는 3학년 관련 학과 성적 산출이 가능해야 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당시 보통교과도 학과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함

※ 2021. 2월 졸업예정자인 합격자가 고등학교 졸업을 하지 못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대학에 재학(휴학) 중이거나 졸업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합격 및 임용을 취소함
※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는 대학교 재학 등 학업의 계속 사유로 임용유예 불가
(단, 고등학교 재학사유 제외)

※ 성취평가제 기준 적용 점수계산방법 예시

【 점수계산 방법 예시 】

-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방법**

  성취도 평균 B 이상 산출값 = ∑(전문교과 이수과목 성취도 환산점수)÷총 이수과목 ≥ 0

  성취도 환산점수 : A=1점, B=0점, C=-1점, D=-2점, E=-3점

- **성취도 A 비율 산출방법**

  성취도 A 비율(%) = (성취도 A 이수과목 수 ÷ 총 이수과목 수) × 100

- **평균석차등급 산출방법**

  평균 석차등급 = [∑(과목별 단위수 × 과목별 등급)]÷∑과목별 단위수

  ※ 석차등급이 산출되지 않는 과목은 제외

6. 추천서류 사전 제출

가. **제출기간** : 2020.3.23.(월) 09:00 ~ 2020.3.27.(금)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학교에서 추천대상자 전원의 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일괄 제출**

※ 추천대상자 개인별 제출 불가, 우편제출시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팀

라. **제출서류**

- 추천 현황표 및 추천서 1부 <서식1, 서식2>
- 생활기록부 사본 1부
- 성적증명서 1부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 성적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기능경기대회 입상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각서 1부 <서식3>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서식4> 1부

마. **문의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

7. 응시원서 접수

가. **대 상 자** : 학교장 추천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터넷 접수

나. **접수기간** : 2020.4.20.(월) 09:00 ~ 2020.4.24.(금) 18:00

다. **접수방법** :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문"의 6. 응시원서 접수 참조

<서식1>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 현황표

1. 학교명 : ○○ 고등학교 (직인)

2. 응시직렬(직류) :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중 기재

3. 추천대상자 현황

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공(학과)	졸업(예정)일	대회명	수상내역	수상일
1	*홍길동*	*1998.11.11*	*남*	*건축과*	*2018.2.20*	*울산지방기능경기대회*	*금상*	*2017.1.10*
2								

※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 첨부

나. 성적우수자

연번	성명	생년월일	성별	응시직렬(직류)	전공(학과)	성적					졸업(예정)일
						성취평가제 미적용	성취평가제 적용				
						평균석차 비율	전문교과		보통교과		
							전과목 성취도평균 B등급이상 이수여부	성취도 A등급비율	평균 석차 비율	평균 석차 등급	
1	나시험	2002.11.11.	남	시설(건축)	건축	5%	O/X (총10과목)	70% (7/10)	1%	1	2021.2.20.

- (성취평가제 미적용시) 졸업석차비율이 이수학과의 상위 50% 이내인 사람
- (성취평가제 적용시)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등급 이상, 그 중 50% 이상의 과목 성취도가 A인 사람
  보통교과: 평균석차비율이 50%이내이거나 평균 석차 등급이 4.5이내인 사람

4. 직렬(직류)별 추천 현황

직렬(직류)	학교내 지원자 수	최종 추천자 수	추천담당자		
			성명	학교 연락처	핸드폰번호
공업(일반기계)					
공업(일반전기)					
시설(건축)					

<서식2>

특성화·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기술직군 공무원 응시대상자 추천서

추천 직렬	

<table>
<tr><td rowspan="5">인적사항</td><td colspan="3">성 명</td><td colspan="4">(한자:)</td><td rowspan="4">사 진
(반명함판,
6개월 이내 촬영)</td></tr>
<tr><td colspan="3">생년월일</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학력사항</td><td colspan="3">출신학교</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소 재 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3">학과(정원)</td><td colspan="4">학과(정원 명)</td></tr>
<tr><td colspan="3">졸업 여부</td><td colspan="4">(졸업) 년 월/(졸업예정) 년 월</td><td></td></tr>
<tr><td rowspan="3">학업성적</td><td>성취평가제 미적용</td><td colspan="2">석차비율</td><td colspan="5">상위 %(등/ 명)</td></tr>
<tr><td rowspan="2">성취평가제 적용</td><td>보통교과</td><td>평균 석차등급</td><td></td><td colspan="2">평균석차비율</td><td colspan="2">상위 %(등/ 명)</td></tr>
<tr><td>전문교과</td><td>성취도 평균B이상</td><td>해당 ( )
미해당 ( )</td><td colspan="2">성취도 A 과목 비율</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3">기능경기대회입상내역</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3">연 락 처</td><td colspan="3">주 소</td><td colspan="6"></td></tr>
<tr><td colspan="3">전화번호</td><td></td><td>핸드폰</td><td colspan="3"></td></tr>
<tr><td colspan="3">e-mail</td><td colspan="6"></td></tr>
</table>

o 위 사람은 **공고문상의 선발직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과**의 졸업(예정)자임을 확인하며,

o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8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20년 월 일

○○○고등학교장 (직인)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추가 제출 서류

1. 생활기록부 사본 1부
2. 성적증명서 1부
   ☞ **평균석차비율 또는 평균석차등급 등 성적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3.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4. 기능경기대회 입상확인서(해당자에 한함) 1부
5. 각서(응시자 본인 작성) 1부
6.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서식3>

각 서

◦ 학 교 명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 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학교장 추천일 현재 대학에 진학(재학·휴학)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합격(임용) 취소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서식4>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응시자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메일, 사진, 연락처, 학력, 경력, 자격·면허 소지사항, 병역사항,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20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경력경쟁 임용시험 자료로 활용 나.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주민등록번호, 면허·자격번호, 생활기록부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0. . . 성명: (인)	2020. . . 성명: (인)

【별첨 2】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계획

1. 편의지원 제공 대상

○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결정된 자로서,
- 시각·청각·지체·뇌병변 등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2. 편의지원 신청

가. 신청기간 : 2020. 4.20.(월) 09:00 ~ 2020. 4.24.(금) 18:00 <※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

나.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에 해당서류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접수의 경우, 제출기간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다. 제출장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유곡동 250번지)

울산광역시교육청 2층 총무과 인사팀(우편번호 : 44540)

라. 제출서류 : 편의지원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중 장애등급과 편의지원 내용에 해당하는 서류

☞ 【참고】 참조

마. 문 의 처 : 울산광역시교육청 총무과 인사팀 (☎052-210-5723~5727)

3.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가. 【참고】 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 대상 여부, 편의지원 신청 가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이등급자는「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본인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되는 편의지원 내용과 증빙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단서(소견서)에 해당 장애유형과 정도 기재]

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받은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 다만, **임신부는**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도 인정됩니다.

※ 해당 지역의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여부(소재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를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병원 확인 후 발급)**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아래 녹색 예시표 참고)**

2)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아래 적색 예시표 참고)**

3)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아래 청색 예시표 참고)**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내용 예시 >

장애유형 및 정도		발급내용 예시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3급 2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급 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기존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사람으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6급 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 0.3이하)	상기인은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기존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기존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사람**으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지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라.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내용이 다를 경우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마. **시험시간 연장 편의지원은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만 제공됩니다.**

바.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학 등 일부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고,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지원)

장애인 등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이 2017년에 개정·시행(2017.3.28.)되어 **2020년부터 지방직 9급(인사혁신처 수탁과목에 한함)** 객관식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사. 시험진행 일정상 신청기간에 편의지원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편의제공 신청자에 대하여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기준에 대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유선을 통해 적합 여부 통보 및 세부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참고

2020년도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상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시험시간 1.5배 연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답안지 대필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6급
	하지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심하지 않은 사람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3>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6급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1>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1~3급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시험시간 연장, 답안지 대필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4~6급 중 시간연장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편의지원 신청서<서식2>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6급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좋은 눈의 시력이 0.04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기존 3급 2호인 사람 중에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1~2급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기존 3급 2호
		좋은 눈의 시력이 0.06이하이거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3급 1,2호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비고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4급2호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4,5급 1호
		나쁜 눈의 시력이 0.02이하이고,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인 사람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시험시간 1.5배 연장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시진단서(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만 제출)	기존 6급 중 좋은 눈 시력 0.3이하
		위 조건 외의 시각장애인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4>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5급 2호, 6급
청각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심하지 않은 사람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편의지원 신청서<서식5> ·장애인증명서 사본	기존 2~6급
기타장애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사람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시험시간 연장 불가	·편의지원 신청서<서식6> ·장애인증명서 사본 ·의사진단서(소견서)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단, 화장실 사용 시간 시험시간에 포함)	·편의지원 신청서<서식7>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 확인서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 한하여 신청

▸ **공동출제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를 지원하지 않으며, 인사혁신처에서 위탁출제하는 과학 등 일부 과목은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고, 수학은 점자문제지만 제공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만 지원)**

장애인 등 편의지원 관련 점자문제지 제공 안내

○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이 2017년에 개정·시행(2017.3.28.)되어 **2020년부터 지방직 9급(인사혁신처 수탁과목에 한함)** 객관식 필기시험은 **「한국 점자 규정」(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5호)을 적용하여 점자문제지가 제공**됩니다.

[서식1]

편의지원 신청서

(상지지체·뇌병변 장애)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상지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별도시험실 배정		
	시험시간 1.5배 연장		
	답안지 대필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2]

편의지원 신청서

(상지지체·뇌병변 장애)

○ 응시직렬(직류)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지원 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상지지체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람)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 (해당자에 한함) **※ 소견서 불인정**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별도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뇌병변 장애인만 해당		
	답안지 대필 ※뇌병변 장애인만 해당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3]

편의지원 신청서

(하지지체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휠체어 사용 등으로 인해 시험장 이동 및 시험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하지지체 장애	별도 시험실 배정		○ 장애인증명서 사본
	동행 보호자		
	휠체어 전용 책상(휠체어 사용자)		

※ 동행 보호자의 시험실 입실은 제한됩니다.
(보호자는 시험시행본부에서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4]

편의지원 신청서

(시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시각장애 (　　)	확대문제지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의사진단서 원본(해당자에 한함) **※ 소견서 불인정**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축소문제지 (확대독서기 사용자)		
	음성지원컴퓨터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 의사 진단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5]

편의지원 신청서

(청각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 원서접수 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여부 : (예, 아니오)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청각장애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장애인증명서 사본
	보조공학기기 지참		

* 장애인증명서의 범위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6]

편의지원 신청서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　　) 장애로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장애유형	편의제공신청	구비서류
<본인 직접 기재>	<본인 직접 기재>	○ 장애인증명서 사본 ○ 종합병원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원본

*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서식7]

편의지원 신청서

(임신부용)

○ 응시직렬 :

○ 성　　명 :　　(휴대전화 :　　)

○ 생년월일 :

위 본인은 2020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아래와 같이 편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 편의신청 내용 >

구분	편의내용	신청여부 (해당란에 '○')	구비서류
임신부	별도 시험실 배정 시험 중 화장실 사용		○ 의사소견서 또는 임신사실확인서 원본

* 의사 소견서에는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2020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울산광역시교육청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말 것 ○ 접수번호 :　　○ 응시번호 :

【별첨 3】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별표12]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

직렬(직류)	자격증			가산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교육행정			변호사	5%
시설(건축)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5%
	기능장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사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3%
시설(일반토목)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5%
	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산업기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능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3%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 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 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가공조립, 생산 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3%

직렬 (직류)	자격증			가산 비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	
공업 (일반 전기)	기술사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5%
	기능장	전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 기사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3%
보건 (보건)	기술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 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보건교육사3급	5%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 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3%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5%